

고 시

◆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26-95호

사당동 인정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고시

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‘사당동 인정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’ 신청에 대하여 조합설립변경 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6년 7월 9일
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

1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- 가. 종 류 :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
- 나. 명 칭 : 사당동 인정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

2.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

- 가. 위 치 : 사당동 196번지
- 나. 면 적 : 2,921㎡

3.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

- 가. 착수 예정일 : 사업시행계획인가로부터 12개월 이내
- 나. 준공 예정일 : 착수예정일로부터 24개월 이내

4.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

- 가. 조 합 명 칭: 사당동 인정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 조합
- 나. 사무소 소재지 :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17길 8 상가에이동 149호

5. 변경사항

- 가. 사무소 주소 변경

공 고

◆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6-1193호

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

자동차 소유자의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과 관련하여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제22조(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)에 따라 운행정지명령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바 「자동차관리법」 제24조의2(자동차 운행정지 등) 제3항 제4호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7월 9일
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

- 제 목 :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
- 공고기간 : 2026. 7. 9. ~ 2026. 7. 23.
- 공고대상

연 번	자동차등록번호	차 명	차대번호	운행정지 명령사유
1	76로7214	BS090	KL5UK42BDHU008699	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3조 제4항 제4호

- 공고장소 : 동작구 구보, 게시판 및 홈페이지
- 공고내용

- 자동차 소유자가 아닌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동법 제24조의2 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으며, 동법 제81조 제7의2호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.
-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동법 제13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될 수 있으며, 직권으로 말소등록 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동법 제80조 제1호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.
- 동법 제24조의2 제4항에 따라 운행정지를 명령한 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세 등 체납금 환수를 위해 우리 구청에서 공매를 할 수 있습니다.

- 문의사항 : 동작구청 교통행정과(☎ 02-820-4043)